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4. 5.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1947 KOREA

차 례

1. 지원자 유의사항	1
2. 대입 지원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3
※ 원서접수 절차 안내	
3. 입학전형 일정	5
4.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6
5. 지원 자격	8
6. 제출서류	13
7. 전형 요소 및 방법	16
8. 전형료	16
9. 입학전형 안내	17
■ 부록	
○ 서식 1) 학력조회 자료	18
○ 서식 2) 수학기간기록표 자료	19
○ 서식 3) 부·모의 외국체류기간 기록표	20
○ 서식 4) 국외학교 학기 기록표	21
○ 서식 5)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22
○ 서식 6)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24
○ 서식 7) 제3국 수학 인정서	25
○ 별표 1) 학사제도 안내전화	26
○ 별표 2) 전북대학교 오시는 길	27

1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함

- 가.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를 통해 공지함
 - 나. 제출서류는 대리인이 제출하여도 가능하나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지원할 수 있음
 - 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지원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함
 - 라. 시험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마. 면접고사에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바.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형기간 연락처는 선발 종료 시점까지 연락(전화 또는 전보)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가 오기 또는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이 책임지지 아니함
 - 사. 입학원서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입국수속 절차 등 미 이행으로 본인에게 불이익(합격 취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아.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불합격 처리함
 - 자.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입학허가 후라도 학력조회 등을 통해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입학허가 취소)
- ※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다고 판단되어 입학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아니함(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또한,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차. 합격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일정과 방법에 따라 입학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카. 접수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지원자격 미달자 및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를 반환함
 - 타.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2025. 3. 13.(목)까지 추가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파.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수집 및 이용항목: 이름(보호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고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보호자 포함), 이메일, 국외수학 및 체류기간(보호자 포함), 환불계좌정보 등
- 수집 및 이용목적: 입학전형, 학사업무, 장학, 통계, 생활관생 선발 및 입학관련 안내를 위한 자료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보유기간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학사지원과, 학생지원과, 재무과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고교명 등	학적부 생성, 학력 조회, 장학생 선발, 통계,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성명, (추가)연락처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생활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등	생활관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등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등	공동원서접수시스템 사용, 지원 및 등록위반자 확인	

아울러, 「공동원서접수시스템」 사용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원서접수 위탁을 실시함

수탁자(위탁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공동원서의 관리 및 전달 등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보유 및 이용기간: 처리목적의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함
-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라 입시관리를 위한 대학 기록물에 대하여 10년 보존
- 공유 및 제공: 위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호

2

대입 지원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 지원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함

- 가. 특별전형 대상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적격자로 판단된 자는 모집요강에 명시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함
-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 해당하며,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본교 및 타교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다.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한 대학에만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포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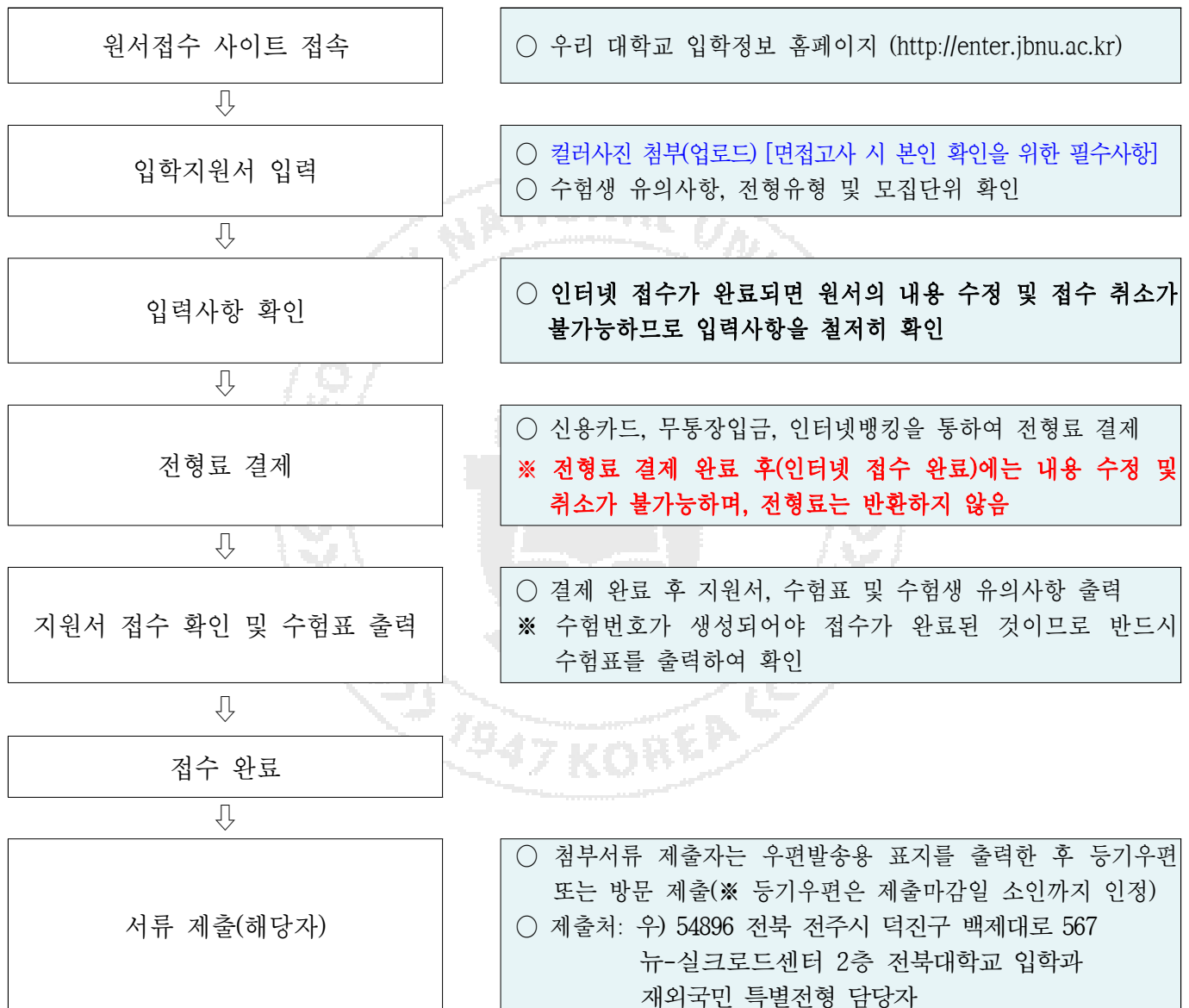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본교 내 복수지원 및 제2지원(2개 모집단위 지원)은 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해야 함
(이 경우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함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초과 접수부터 취소하며, 우리 대학의 원서접수 시간은 우리 대학 창구에서 원서를 접수한 시간 기준임)
-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지원 및 등록 상황을 추후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 원서 접수 절차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되오니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2024. 7. 12.(금) 17:00** 이후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며,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적용에 따라 접수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는 반드시 접수 방법 등을 재확인하여 접수하기 바람

3

입학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학원서접수 (원본제출)	2024. 7. 8.(월) 09:00 ~ 7. 12.(금) 17:00까지	본교 홈페이지 (http://enter.jbnu.ac.kr)	인터넷으로만 접수
서류제출	2024. 7. 12.(금) 18:00까지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과	■ 직접방문, 택배, 등기우편 [등기우편] 2024. 7. 12.(금) 국내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직접방문, 택배] 2024. 7. 12.(금) 18:00까지 도착분 유효 - 서류제출일 시 기한 엄수
서류심사 결과통보	2024. 8. 8.(목) 14:00예정	본교 홈페이지 (http://enter.jbnu.ac.kr)	홈페이지 공지
면접고사	2024. 8. 20.(화) 14:00예정	지원학과 사무실	
합격자 발표	2024. 9. 12.(목) 14:00예정	본교 홈페이지 (http://enter.jbnu.ac.kr)	
추가서류 제출	2025. 3. 13.(목) 18:00 까지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과	해당자만 제출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추후안내	본교 홈페이지 (http://enter.jbnu.ac.kr)	등록예치금 납부 대신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등록금 납부	추후안내	본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

4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 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 고
		제1유형	제2유형	
간호대학	간호학과	-	-	
공과대학	공학계열1	약간명	약간명	
	공학계열2	약간명	약간명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계열	약간명	약간명	
	스마트팜학과	-	-	
	생명자원융합학과	약간명	약간명	
사범대학	교육학과	-	-	
	국어교육과	-	-	
	독어교육과	-	-	
	영어교육과	-	-	
	사회과교육학부	-	-	
	과학교육학부	-	-	
	수학교육과	-	-	
	체육교육과	-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약간명	약간명	
경상대학	경상계열	약간명	-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계열	약간명	약간명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	
약학대학	약학과	-	-	
예술대학	무용학과	약간명	약간명	
	미술학과	약간명	약간명	
	산업디자인학과	약간명	약간명	
	음악과	약간명	약간명	
	한국음악학과	약간명	약간명	
의과대학	의예과	-	-	
인문대학	고고문화인류학과	약간명	-	
	국어국문학과	약간명	약간명	
	독일학과	약간명	약간명	
	문헌정보학과	약간명	약간명	
	사학과	약간명	약간명	
	스페인·중남미학과	약간명	약간명	
	영어영문학과	약간명	약간명	
	일본학과	약간명	약간명	
	중어중문학과	약간명	약간명	
	철학과	약간명	약간명	
	프랑스·아프리카학과	약간명	약간명	
	국제학부	약간명	약간명	

대 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 고
		제1유형	제2유형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계열1	약간명	약간명	
	자연과학계열2	약간명	약간명	
	스포츠과학과	약간명	약간명	
치과대학	치의예과	-	-	
환경생명자원대학	환경생명자원계열	약간명	약간명	
본부	융합자율전공학부1(전주캠퍼스)	약간명	-	
	융합자율전공학부2(특성화캠퍼스)	약간명	-	
	국제이공학부	약간명	약간명	

-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모집을 희망하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제1유형은 총 입학정원의 2%(80명)내에서 모집할 계획임
- ▶ 제1유형 전체 합격자가 최대 선발가능인원(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을 초과할 경우,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함(이 경우에도 모집단위별 최대선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 ▶ 제2유형은 모집단위에서 수용가능 한 인원을 모집할 계획임
-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에 별도 공고함

5

지 원 자 격

1. 제1유형: 입학정원 2%이내 모집 재외국민

※ 아래 기본 학력요건, 자격요건 및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기본 학력요건

< 기본 학력요건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국외 근무자의 자녀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기존 영주교포자녀, 국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국외근무 공무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등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원 가능함

다. 지원 자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구 분	세부인정기준(각 항을 모두 충족)
공통 사항	① 입학허용기간: 재외국민은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② 「외국학교」 인정기준 1)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2)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3)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고, 유아원·유치원, 국내외 검정고시,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및 사이버 학습 등은 제외(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만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 ③ 「국외근무자」 인정기준(모든 지원 자격에 해당함)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④ 「국외근무자의 자녀」 인정기준(모든 지원 자격에 해당함)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단,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⑤ 「국외재학기간」 인정기준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이는 재학인정기준으로만 적용되며,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이 축소·변경되는 것은 아님)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공통 사항

⑥ 「국외체류일수」 인정기준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3)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⑦ 「재학기간 3년 이상」 인정기준

- 1)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재학한 3개 학년 이상의 수료한 기간을 말함
- 2) 학생의 재학기간과 부모 중 1인 이상(파견당사자)의 국외근무기간은 중첩되어야 함
- 3) 외국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5년 2월말(일본은 3월말)까지 졸업하여야 하며, 졸업 시점까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⑧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⑨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공통 사항

- ⑩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누락	A	A	A	A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4-2로 G2-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⑪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⑫ 거주(체류)기간 산정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 ⑬ 거주(체류)기간, 학력,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2. 제2유형: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구 분	자 격 요 건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에도 국외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국외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													
	<table><tr><th>학년제</th><th>인정여부 및 인정조건</th><th>비고</th></tr><tr><td>10학년 이하</td><td>미인정</td><td rowspan="3">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td></tr><tr><td>11학년제</td><td>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 </td></tr><tr><td>12학년제</td><td>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tr><tr><td>13학년 이상</td><td>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td></td></tr></table>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	12학년제	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												
12학년제	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 입학허용기간: 재외국민은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유아원, 유치원,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는 불인정함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 이탈주민 •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국내 검정고시 인정)													
	※ 입학허용기간: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결혼이주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으로 아래 어학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3급 이상 소지자 또는 본교 한국어학당 (구 언어교육원 한국어센터)에서 언어연수 4급 이상을 수료한 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관한 자격요건은 위 전교육과정이수자 자격요건과 동일함													

6

제 출 서 류

가. 공통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입학원서	인터넷접수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
2	수학기간기록표	
3	학력조회자료	
4	국외 학교 학기 기록표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학력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6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북한이탈주민 제외)
7	외국학교 재학사실증명서	재학학교 발행(재학기간, 연·월·일 정확히 기재) ※ 북한이탈주민 제외

나. 지원자격 구분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기존 영주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자녀, 기타 재외국민자녀,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모두 해당)	1) 부·모 외국체류기간기록표 1부 2) 중·고등학교 학사 일정표(학기 개시일과 종료일 명시) 3)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5) 여권 사본(부·모·학생) 각 1부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부·모·학생) 각 1부 7)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학생) 각 1부 8) 보호자 재직 증명서 (국외근무경력 기재, 파견지역 명시) 1부 ※ 보호자는 외국에서 근무 거주하는 지원자의 부 또는 모 9) 보호자의 실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국 세금납부 증명서(보호자), 월급명세 등 10) 해외지사 설치인증 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승인)서(해당자) 1부 ※ 단,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임직원의 경우 국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1부 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해당자) 13)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해당자) 1부 14)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서(해당자) 1부 15)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부

구 분	제출서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만 해당)	1) 외국국적증명서(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2)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부 3)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1부 4) 국적 상실 확인 증명서(학생 : 기본증명서) 1부 5) 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이상 예금잔고증명서 1부 6)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전교육과정 이수자	1)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부 2) 여권 사본(학생) 1부 3)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학생) 1부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 군, 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2)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 1부 (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을 인정한 것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결혼이주민	1) 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원본 또는 본교 언어교육부 한국어학당 한국어연수 4급 이상 수료증 원본 1부

- 1)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또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서식6]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와 함께 제출
- 2) 제출서류 상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예) 학교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공증 필요)
- 3)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

구 분	자격인정 기준	제출서류
부모의 이혼(사망)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 이혼(사망)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함	1)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부(모)가 이혼 후 재혼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친권자(또는 친권자의 배우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1)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2)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일부서류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를 받은 후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합격자는 추가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나.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 다. 서류 미제출지는 불합격 처리하며, 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지원자의 책임임
- 라. 접수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마. 자격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 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바.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본교 특별전형 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함

※ 추가서류 제출 안내

- 가. 학생의 지원자격 관련 서류
 - 1) 제출대상: 최종 합격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제출서류
 - 가) 외국학교 졸업예정자: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등
 - 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학교의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 나. 보호자의 지원자격 관련 서류
 - 1) 제출대상: 국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해야 보호자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원서접수 시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제출이 불필요함)
 - 2) 제출서류: 보호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등 지원자격 서류
- 다. 제출기한: **2025. 3. 13.(목) 18:00까지**
- 라. 제출처: 우)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뉴-실크로드센터 2층
전북대학교 입학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 마. 제출방법: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7

전형요소 및 방법

가. 전형요소: 면접고사 100%

나. 선발방법

- 제 1·2유형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지망자 중에서 면접고사에 응시한 자 중 총점(100점 만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함
- 면접고사 결과 면접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면접고사 만점의 40% 미만으로 평가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진행됨
- 지원동기와 적성, 학구적 태도 및 교양(인격),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함
-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전형료

가. 전형료: 60,000원

구분	일반 전형료	면접 고사료	계
전 유형	30,000원	30,000원	60,000원

나. 전형료 반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관련)

1) 반환 대상 및 금액

-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③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④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중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 ⑤ 지원자격 미달 및 서류 미제출자 전원: 30,000원
 - ⑥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되,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시 이용비용은 차감하고 반환하며,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2) 반환방법
- ① 입학원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이체
 - ※ 본인 및 보호자 이외의 환불계좌 입력으로 인한 입금 사고는 지원자 책임임

9

입학전형 안내

- ▶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
- ▶ 기타 문의사항: 전북대학교 입학처 입학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담당자
- ▶ 주 소: 우)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과
- ▶ 연락처: (063) 270 - 2500, 전송(FAX) (063) 270 - 4745

서식 1)

학 력 조 회 자 료

성 명				수 험 번 호		
지 원 모집단위						
과 정	표기	학 교 명	재학 기간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mail)
초등 학교	한글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중 학교	한글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고등 학교	한글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 외국소재 학교 교무담당자 E-mail 주소는 필수적으로 기입

서식 2)

수 학 기 간 기 록 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	-------	-----

▶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 수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으며 본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귀교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2024. . .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서식 3)

부, 모 (또는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기록표

수험번호 :	모집단위 :	성명 :
--------	--------	------

▶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보호자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구 분	외국 체류기간		소재지		-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 종료시는 ▲ 표시												
	기 간	체류년수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모(母) 성 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으며 본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귀교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2024. . . .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서식 4)

국외 학교 학기 기록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학교명	학기 시작 및 종료일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학교명: 반드시 공식 명칭을 기재하되, 국외 소재 중·고교만 기입함

※ 3학기, 4학기의 경우 3학기제 혹은 4학기제 학교의 경우만 기입(2학기제 학교의 경우 3, 4학기란은 기재하지 않음)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서식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9.>

(앞쪽)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미포함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전북대학교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063-270-4862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전북대학교 입학 관계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 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 · Gun · Gu or Eup · Myeon · 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 · 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Year) 월(Month) 일(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뒤쪽)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서식 6) (해당자만 작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모집단위		지원자격 구분	

◆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증빙자료 :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 인 : (인)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7) (해당자만 작성)

제 3 국 수 학 인 정 서

수험번호	
성명	
모집단위	
지원자격구분	

학생 재학국		보호자 근무국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학년 학기) ~ 년 월 일 (학년 학기)		

- ▶ 중·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십시오.

별표 1)

학사제도 안내전화

담당 업무	안내 부서	전화 번호 (지역번호: 063)	비 고
입학전형관리	입학과	270-2500	전주캠퍼스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학생지원과	270-4089	전주캠퍼스
등록금 책정	재정기획부	270-4173	전주캠퍼스
등록금 납부, 환불	재무과	270-2055	전주캠퍼스
전학(과)	학사지원과	270-2092	전주캠퍼스
휴학 등 학적	학사지원과	270-2093	전주캠퍼스
복수전공, 부전공	교무과	270-2084	전주캠퍼스
교직이수 및 교원자격 취득	교무과	270-2084	전주캠퍼스
수강신청 관리	교육혁신처 (교양 이수)	270-4276	전주캠퍼스
	학사지원과 (전공이수 및 기타)	270-2103~2105	전주캠퍼스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국제협력부	270-4964, 4643, 4757, 2184, 4892	전주캠퍼스
취업안내	취업진로처	270-4142	전주캠퍼스
수험생 예비소집 장소 및 면접장소 안내	간호대학	270-4484	전주캠퍼스
	공과대학	270-4385	전주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270-2486	전주캠퍼스
	사범대학	270-2697	전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270-2906	전주캠퍼스
	상과대학	270-2977	전주캠퍼스
	생활과학대학	270-3826	전주캠퍼스
	수의과대학	850-0907	특성화캠퍼스
	예술대학	270-3707	전주캠퍼스
	약학대학	219-5636	전주캠퍼스
	의과대학	270-3063	전주캠퍼스
	인문대학	270-3157	전주캠퍼스
	자연과학대학	270-4401	전주캠퍼스
	치과대학	270-4005	전주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	850-0561	특성화캠퍼스
	융합자율전공학부	270-4948	교무처
	대학본부 국제이공학부	219-5586	전주캠퍼스
생활관 입주 안내	생활관	270-3630, 4723	전주캠퍼스
		850-0624	특성화캠퍼스

별표 2)

전북대학교 오시는 길

전주캠퍼스 지도(Daum)



[전주캠퍼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우편번호: 54896)

특성화캠퍼스 지도(Daum)



[특성화캠퍼스(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79(우편번호: 54596)